

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지원 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591
----------	------

2021년 9월 10일  
보건복지위원회

## I.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1년 8월 11일 김광수 의원 외 31명
2. 회부일자 : 2021년 8월 18일
3. 상정일자 : 제302회 임시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2021년 9월 8일 상정·의결(수정안 가결)】

## II. 제안설명의 요지(김광수 의원)

1. 제안이유
  - 법률 제18302호로 개정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2023. 7. 21. 시행)에 따르면 구청장이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중화장실등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설치의무가 명시되었음.
  - 이에 개정내용에 따라 구청장이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원활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내 개방화장실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개방화장실에서의 안전관리 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시장의 책무에 반영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3조제3항).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 Ⅲ.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문성)

#### 1 개정안의 취지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21년 7월), 구청장이 공중화장실에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하는 의무가 명시됨. 해당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시장의 공중화장실의 안전관리 시설 설치 지원 등을 통해 안전한 개방화장실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안되었음.

#### 2 개정안의 주요내용 검토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제2조에 따르면 공중화장실은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의미하며, 개방화장실이란 공공기관의 설치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동 법 제9조제2항<sup>1)</sup>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화장실을 의미함.
- 기존 법에서 규정되었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주로 화장실의 위생수준과 이용편의에 관련한 것이어서 공중화장실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음. 이에 법 제7조제4항을 신설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 기준과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여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이

1)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개방화장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용할 수 있도록 개정된 바 있음.

- 이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비상벨<sup>2)</sup>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 한편, 서울시에서는 이와 관련해 「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지원 등을 위한 조례」(이하 “조례”)를 제정하고, 법 제9조제2항에서 규정된 서울특별시 자치구청장이 지정한 화장실의 운영과 지원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기존 조례안에서는 시장의 책무로 개방화장실의 지정 및 확대, 시민 인지 확대, 안전보장 등을 구청장과 협의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여 있음.
- 시민건강국에서는 이에 근거해 자치구의 개방화장실 지원을 위해 관리운영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음. 2021년 기준 시민건강국에서는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을 통해 5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지정 현황 (2021년)

(단위 : 개소)

계	빌딩	상가 및 근생시설	주유·충전소	시장·대규모 점포	종교시설	음식점
1,249	554	272	195	97	63	68

2) 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

- 또한 시민건강국에서는 민간 남녀공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을 통해 층간분리, 남녀화장실 분리, 안전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고 있음.
- 해당 개정안은 법 개정안을 반영한 사항이며 개방화장실을 대상으로 비상벨과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기존에 진행 중이었으므로 조례로 명시하는 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시장의 책무) ①·② (생략) ③ 시장은 개방화장실을 이용하는 시민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구청장과 협의하여 개방화장실에서의 <u>범죄예방을 위한 조치</u> 등 각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u>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u> -----.

- 그러나 개정안의 문구에서 ‘설치’ 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어떤 일을 하는 데 필요한 기관이나 설비 따위를 베풀어 두는 것을 의미하고, 기존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조치’ 는 벌어지는 사태를 잘 살펴서 필요한 대책을 세워 행하는 것을 의미함<sup>3)</sup>.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개정 조례안이 기존 조례안의 범위를 해석상 축소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3) 네이버 국어사전 참조.

### 3 종합의견

-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바, 법령 및 조례와의 체계성 측면에서 부합한다고 할 수 있음.
- 또한 개정 법 제16조를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정조항에 맞춰 기존 공중화장실 등을 개선할 때에는 그 개선비용의 일부를 우선적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음.
- 그러나 기존 조례와 개정안을 비교했을 때, 개정안에서 기존 조례의 범위를 해석상 축소시킬 우려가 있는 바, 해당 내용과 조례의 입법취지를 반영해 문구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하겠음.
- 또한, 개정사항을 반영한 구체적인 예산집행 및 사업 시행시점 등은 개정법의 시행일이 2023년 7월 21일이라는 점을 고려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하겠음.

####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V. 수정안 요지

##### 1. 수정이유

- 시장으로 하여금 개방화장실을 운영함에 있어 범죄 예방과 안전조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부 문구를 수정함.

##### 2. 수정안 주요 내용

-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를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로 한다. (안 제3조제3항)

#### VI.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지원 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 련 2591
----------	-------------

제안년월일 : 2021년 9월 8일  
제 안 자 : 보건복지위원장

## 1. 수정이유

- 시장이 개방화장실의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대책 전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문구를 수정함 .

## 2. 수정의 주요 내용

-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를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로 수정함(안 제3조제3항)



# 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지원 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지원 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3항 중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를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지원 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지원 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범죄예방을 위한 조치”를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시장의 책무) ①·② (생략)</p> <p>③ 시장은 개방화장실을 이용하는 시민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구청장과 협의하여 개방화장실에서의 <u>범죄예방을 위한 조치</u> 등 각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p>	<p>제3조(시장의 책무)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 ----<u>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u>----- -----.</p>